

# 의원, 특별의원 대표자 선정통보

회사명 및 기관단체명		
소재지		
선정 대표자	직 위	
	성 명	(한글) (한자)
	생 년 월 일	
	대표자 자택주소	*명절 선물 등 수령 가능 주소
	자택전화번호	
	(실제)생일	*음력/양력 표기
전 화	사무실(비서):	팩 스:
휴 대 폰	대표자:	비 서: (성명/직위: / )
이 메 일	대표자:	비 서:

상공회의소법 제26조, 울산상공회의소 정관 제39조에 의하여 의원 대표자를 위와 같이 선정 보고합니다.

2021년 2월 일

주 소 :

업 체 명 :

대표(이사): (인)

별첨 : 1. 이력서 1부 2. 반명함판(4×5) 사진 3매

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## 울산상공회의소 의원 이력서

사 진  
(4cm x 5cm)

성명	한글		생년월일 (실제생일)	
	한자			
	영문		주민등록번호(앞)	
전화번호			E-mail	

주 소

학 력	기 간	학 교 명		전 공
		고등학교(졸·중퇴)		
		대 학교(졸·중퇴)		
		대 학 원(졸·중퇴)		
경 력 사 항	기 간	근 무 처	직 위	업 무 내 용
대 내 외 포 상	일 자	내 용		시 상 처

위에 기재한 이력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2021년 2월 일

성 명 : (인)

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제20대 울산상공회의소 의원, 특별의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대해 제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.

- 다 음 -

○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

구분	항 목	목 적
1	성명, 생년월일	·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
2	전화번호(핸드폰 번호 포함)	· 상공회의소 공지사항 등 서비스 정보제공
3	주소	· 우편물 발송 등
4	본인의 우대사항 ※ 경력, 이력서, 기타 사항 등	· 우대사항에 대한 확인 · 포상 및 위원 위촉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	2021. 2. ~ 2024. 3. *제20대 울산상공회의소 의원 기간
----------------	--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021년 2월 일

업 체 명 :

성 명 : (서명)

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## <참고사항>

### [상공회의소법]

**제26조(법인의원의 대표자)** ① 법인으로서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(이하 "법인의원"이라 한다)는 그 법인의 임원(영업소·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)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
2.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인 자
3.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

③ 법인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회의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.

※ 제23조(의원등의 자격제한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.

1.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아닌 자 (선거권이 없는자)
2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(피성년 후견인)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7.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·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②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.

### [울산상공회의소 정관]

**제39조(법인의원의 대표자)** ①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원 또는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(이하 "법인의원"이라 한다)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(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)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.

1. 제37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
2. 본 회의소의 의원인 자
3. 본 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

③ 법인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 회의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.

※ 제37조(의원등의 자격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.

1. 회원이 아니거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(선거권이 없는자)
2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(피성년 후견인)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5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7.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·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이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